

19 순교자기념사업부 보고

제102회기 순교자기념사업부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부 장 김성환
서 기 김상식

1. 조 직

- 1) 임 원 : 부장 김성환, 서기 김상식, 회계 조중길, 총무 최효식
- 2) 실행위원 : 전대준 임건호 배명수 최기신 김성도 신형수 김병희 이용률 추성환 이순봉 한승철
성강석 박요한 최규환 강태희 박상옥 송병원 정국면 송인창 이길동 박광우 김충규
김용환 최윤진
- 3) 부 원 : 엄기용 신완철 이동규 정찬규 전창빈 양은중 박철진 우강국 이철우 박영진 하종원
김덕한 안현규 박희만 최세선 전안균 이우삼 명치만 나명주 김성섭 박재웅 이상근
원용덕 임영식 박인천 이준우 이태훈 이석준 한인규 김연옥 류영열 곽후상 홍언표
주진복 예대완 임갑식 길순달 여종림 윤웅열 이성근 권장혁 서연모 한상수 이점수
조자연 우의창 장정국 박장호 현대근 박병요 성요한 정대용 한규철 고혜원 김양흡

2. 회 의

1) 전체회의

(1) 제1차 전체회의

☞ 일 시 : 2017. 9. 19(화) 14:00

☞ 장 소 : 기쁨의교회

☞ 결의사항

① 임원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실행위원 선정은 임원회에 일임하다.

부장 : 김성환 목사

서기 : 김상식 목사

회계 : 조중길 장로

총무 : 최효식 목사

② 제102회 총회순교자사업과 기타 잔무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2) 실행위원회의

(1) 제1차 실행위원회

☞ 일 시 : 2017. 12. 12(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순교자 유족현황을 파악하기로 하다.
- ② 순교자기념사업부 예산을 확인하다.
- ③ 순교자 및 순직자에 대한 규정을 협의하다.
- ④ 임원 및 순교자유족간담회를하기로 하다.
- ⑤ 한국교회 순교자기념관 방문 및 사업계획을 하다.
- ⑥ 순교유적지를 방문하기로 하다(호남 및 영남 일원).
- ⑦ 순교자 및 순직자 등재 감사예배를하기로 하다
- ⑧ 제29회 순교자 및 순직자 유족초청예배를하기로 하다.
- ⑨ 순교자기념주간 및 주일을 실시하기로 하다.
- ⑩ 제101회기 순교자기념사업부 보고서를 확인하다.
(102회기 순교자기념사업부 명단, 순교자유족 명단)
- ⑪ 순교자가 증가하여 예산추경을 청원하기로 하다.

3) 임원회

(1) 제1차 임원회

☞ 일 시 : 2017. 10. 19(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순교 및 순직의 개념 정의에 관한 연구는 부장, 총무께 일임하여 다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연구비는 별도로 지급하다)
- ② 순교지 방문은 영·호남 1박 2일로하기로 하다.
- ③ 순교자기념관 방문은 11월 9일 임원회 후하기로 하다.(순교자기념관과 상의 후 진행)
- ④ 예산은 추경하기로 하다.
- ⑤ 순교자 유족 초청예배는 5월에하기로 하다.
- ⑥ 임원과 유족간담회는 12월에하기로 하다.

(2) 제2차 임원회

☞ 일 시 : 2017. 11. 09(목)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순직자에 대한 개념 정리를 다음 회의에하기로 하다.
- ② 순교자 박병근 전도사님 유족대표를 박남규씨로 바꾸기로 하다.
- ③ 실행위원회를 12월 12일 오전 11시에 모이기로 하다.
- ④ 순교자유족초청예배 행사준비는 내년 상반기로하기로 하다.
- ⑤ 용인한국교회순교자기념관을 방문하여 순교자 존영 진열상황을 확인하다.

(3) 제3차 임원회

☞ 일 시 : 2018. 1. 29 ~ 30(1박 2일)

☞ 장 소 : 법성교회

☞ 결의사항

- ① 3월 27일에 법성교회 순교자 7인 등재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하다.

- ② 순교자, 순직자 위임된 규정을 확정하다.
- ③ 차기 임원회를 2월 22일(목)에 하기로 하다.

(4) 제4차 임원회

☞ 일 시 : 2018. 2. 22(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법성교회 순교자 7인 등재 감사예배의 순서 담당자를 정하다.
- ② 유족초청 예배를 5월 14~15일에 하기로 하다.(장소는 계룡스파텔로 하기로 하다.)
- ③ 순교자 증가와 순직자 확정으로 예산을 2,000만원 추가 청원하기로 하다.
(예산 추가청원의 사유는 순교자유족 여비 상향책정 및 순직자들에 대한 고려 등.)
- ④ 다음 임원회를 3월 8일 ~ 9일에 갖기로 하다.

(5) 제5차 임원회

☞ 일 시 : 2018. 3. 8(목)~9(금)(1박2일)

☞ 장 소 : 계룡스파텔

☞ 결의사항

- ① 법성교회 순교자 7인 등재 감사예배를 3월 27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하다.
- ② 법성교회 순교자 7인 등재 감사예배 순서 담당자를 정하다.
- ③ 5월 순교자 유족초청 예배시 레크레이션을 정영진 코미디언에게 의뢰하기로 하다.
- ④ 일사각오 뮤지컬을 공연하여 순교자들의 신앙과 사상을 기리는 시간을 갖기로 하다.

(6) 제6차 임원회

☞ 일 시 : 2018. 3. 27(화) 10:00

☞ 장 소 : 법성교회

☞ 결의사항

- ① 법성교회 순교자 7인 등재 감사예배 행사 순서를 점검하다.
- ② 법성교회 순교자기념비 제막식을 하기로 하고, 감사예배 후 시행하다.
- ③ 7차 임원회를 4월 12일(목) 오전 11시에 하기로 하다.

(7) 제7차 임원회

☞ 일 시 : 2018. 4. 12(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순교자유족 초청예배 진행을 의논하다.
- ② 순교자유족 초청예배 예산안을 점검하다.
- ③ 행사 일정 및 순서를 조정하고 의결하다.
- ④ 순서자 및 강사를 선정하다.
- ⑤ 기념품, 간식 및 선물을 점검하다.
- ⑥ 차기 임원회를 5월 14일 11시에 하기로 하다.



(8) 제8차 임원회

☞ 일 시 : 2018. 5. 15(화) 11:00

☞ 장 소 : 계룡스파텔

☞ 결의사항

- ① 순교자유족 초청예배 진행사항을 최종 점검하다.
- ② 차기임원회를 6월 14일(목) 총회에서 하기로 하다.

(9) 제9차 임원회

☞ 일 시 : 2018. 6. 14(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순교자유족초청예배 결산의 건을 받기로 하다.
- ② 순교자기념주일 및 주간 광고를 게재하기로 하다.
- ③ 103회기 순교자기념사업부 사업예산을 협의하다.
 - 1) 순교자유족 초청예배 : 45,000,000원
 - 2) 순교자기념주간 광고 및 홍보 : 10,000,000원
 - 3) 순교자등재감사(순직포함) : 5,000,000원
 - 4) 한국교회 순교자기념관 영정사진 등재 : 10,000,000원
 - 5) 순교자 및 순직자 발굴 : 10,000,000원
 - 6) 순교자사례집 발간 : 15,000,000원
 - 7) 회의비 : 8,000,000원
- 합 계 : 103,000,000원
- ④ 순직자교회 탐방 및 현장 확인을 위한 추경 2,000,000원을 청구하기로 하다.
- ⑤ 순직자 현장답사를 위한 답사를 하기로 하다(서울햇불교회, 상주순직자 방문 등).

3. 주요사업 보고

1) 제 29회 순교자유족 초청예배

(1) 일 시 : 2018년 5월 14일(월) ~ 15일(화)

(2) 장 소 : 대전 계룡스파텔

(3) 참석인원 : 110명

가. 순교자 유족 : 78명(39가정)

나. 순교자 임원 : 4명

다. 직원 : 3명

라. 기타(순서담당자 및 봉사자 등) : 25명

(4) 결 산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비 고
행사비	33,951,210	위로금	9,900,000	참석가정: 39가정*20만원 미참석가정: 21가정*10만원
		순서비/여비	1,630,000	
		연극, 레크레이션	7,000,000	연극 일사각오 공연
		기념품	1,760,000	고추장 세트
		숙박비	3,585,500	
		식 비	5,780,000	
		간식비	1,820,370	선물 및 간식
		인쇄비, 발송비	840,000	순서지, 감사패, 운송비
		진행비	1,635,340	
합 계	33,951,210		33,951,210	



청 원 서

수신 : 총 회 장

참조 : 서 기

제목 : 순직자 등재 및 규정 입안 청원의 건

순교자기념사업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순직자 등재를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박은규 목사(상주서문교회) 순직자 등재

본 총회순교자기념사업부에서는 순교자들의 신앙을 계승하며 그 유족들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순교자 등재 및 순교지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교현장에서 순직한 박은규 목사(상주서문교회)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순직자 총회등재를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순교 및 순직자에 대한 규정 제정

본 총회순교자기념사업부에서는 순교자 및 순직자에 관한 규정을 입안하였습니다.

순교자 기준, 심사절차 및 예우 등의 규정을 설정하였으며, 순직자의 정의, 선정 기준 및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을 선정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순교 및 순직자에 대한 규정

2018년 9월

총 회 순 교 자 기 념 사 업 부

부 장 김 성 환

서 기 김 상 식

별첨.

순교 및 순직자에 대한 규정

제1편 순교자에 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교자의 정의, 순교자 인정 절차를 공인하여 공교회의 거룩한 공동신앙 유산인 순교의 의미를 확립하고 온 교회에 공포하는 것과 국내외에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전도 사명을 수행하다가 박해를 받아 사망한 본 교단 소속 목사, 장로, 교인의 순교신앙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다음 4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순교자라 칭한다.

1.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죽임을 당한 자.
2. 박해의 결과로 타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자.
3. 순교에 걸 맞는 죽임을 당한 자.
4. 순교자의 평소의 신앙생활이 비윤리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3조(신청절차) 본 규정의 제2조(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 다음의 절차로 총회 순교자기념사업부에 신청한다.

1. 사후 5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후 5년의 시간은, 순교자의 추서가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선 성령의 추서임을 나타내는 기간이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자들이 예비순교자에 대한 기억의 연속성이 보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성령의 기억하게 하심을 근거로 예비순교자를 기념하고 그 신앙을 계승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지의 연속성을 자료의 축척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시간이다.
3. 순교자 신청은 예비순교자를 기리는 유가족이나 공동체, 청원자의 소속 교회나 청원자의 소속 노회가 총회 순교자기념사업부에 심사를 청원한다.

제4조(신청처리)

1. 순교자기념사업부는 심사를 위한 증언자의 출석과 관계자와 교회, 노회,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자와 교회, 노회, 기관 등은 이에 응해야 하고 제공할 수 없는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순교자기념사업부의 회의와 심사를 위한 재정은 현행 예산 범위 내에서 하되 총회 규정에 따라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 할 수 있다.
3. 순교자기념사업부의 행정은 총회 문서규정에 따라 총회를 통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1. 이 규정에 의한 순교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별도 부서 없이 순교자기념사업부에서 담당한다.
2. 순교자기념사업부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증언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자와 해당 교회, 노회와 기관에 순직관계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자, 교회, 노회,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기준) 다음 각 사항의 부합 여부, 내용 확인, 자료 등을 통해 죽음의 의미적(Semantic),



법적(Legal), 도덕적(Moral) 엄격성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순교자 여부를 정한다.

1. 제2조(정의)의 순교 죽음 부합 여부

- 1) 실제로 죽임을 당해야 하고
- 2)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임을 당해야 하고
- 3) 그리스도의 신앙을 반대하거나 증오하는 자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하고
- 4) 박해 현장에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

2. 목격자의 증언 또는 목격자나 직접 관계자에게 전해들은 2인 이상의 증언자들과 면담(육하원칙에 의거한 증언서) 확인

3. 순교 사건이 직접 기록된 문건 자료(개인기록, 출판기록 등) 유무

4. 순교 사건의 정황이나 당시 상황이 간접 기록된 문건 자료 유무

제7조(심사) 순교자기념사업부는 제6조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성을 준수하고 순교

1. 심사를 회기 중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차기 순교자기념사업부로 넘길 수 있다.

2. 최종 토론 후에는 순교자기념사업부 임원들의 비밀투표로 순교자 여부를 결정하고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단, 청원과 관련한 특수 관계가 있는 임원은 최종 토론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투표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3. 결정 사실을 총회장에게 보고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가결을 득함으로 순교자로 추서한다.

제8조(순교자의 예우)

1. 총회 순교자 명단에 등재한다.

2. 총회장 명의 순교자 증서를 신청자에게 수여한다.

3. 총회 홈페이지, 총회사(史)에 기록을 남긴다.

제9조(부칙)

1.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총회 순교자기념사업부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2. 개정은 순교자기념사업부 제안으로 임원 및 실행위원회의에서 출석 3분의 2찬성으로 개정한다.

3. 본 규정은 임원 및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한 날부터 시행된다.

4. 본 규정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규정양식) : 별지

제2편 순직자에 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외에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전도 사명을 수행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본 교단 소속 목사, 장로, 교인의 공로를 기리고 후진들에게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순직”이라 함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박해를 받아 사망한 순교”의 의미와는 다르게 제3조(적용범위) 1, 2, 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선교 및 교회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게 적용한다.

- 1. 복음을 전파하거나 복음을 전파하려 가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자
- 2. 교회를 건축하거나 교회를 돌보는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자

3. 순교자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사망한 자

제4조(심사위원회)

1. 이 규정에 의한 순직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별도 부서 없이 순교자기념사업부에서 담당한다.
2. 순교자기념사업부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증언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자와 해당 교회, 노회와 기관에 순직관계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자, 교회, 노회,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절차) 제2조(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 다음의 절차로 총회 순교자기념사업부에 신청한다.

1. 사후 3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후 3년의 시간은 순직자의 추서가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선 성령의 추서임을 나타내는 기간이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자들이 예비순직자에 대한 기억의 연속성이 보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성령의 기억하게 하심을 근거로 예비순직자를 기념하고 그 신앙을 계승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지의 연속성을 자료의 축척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시간이다.
3. 순직자 신청은 예비순직자를 기리는 유가족이나 공동체, 청원자의 소속 교회나 청원자의 소속 노회가 총회 순교자기념사업부에 심사를 청원한다.

제6조(신청처리)

1. 순교자기념사업부는 심사를 위한 증언자의 출석과 관계자와 교회, 노회,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자와 교회, 노회, 기관 등은 이에 응해야 하고 제공할 수 없는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순교자기념사업부의 회의와 심사를 위한 재정은 현행 예산 범위 내에서 하되 총회 규정에 따라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 할 수 있다.
3. 순교자기념사업부의 행정은 총회 문서규정에 따라 총회를 통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7조(심사기준) 다음 각 사항의 부합 여부, 내용 확인, 자료 등을 통해 죽음의 의미적(Semantic), 법적(Legal), 도덕적(Moral) 엄격성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순직자 여부를 정한다.

1. 제2조(정의)의 순직죽음 부합 여부
2. 목격자의 증언 또는 목격자나 직접 관계자에게 전해들은 2인 이상의 증언자들과 면담(육하원칙에 의거한 증언서) 확인
3. 순직 사건이 직접 기록된 문건 자료(개인기록, 출판기록 등) 유무
4. 순직 사건의 정황이나 당시 상황이 간접 기록된 문건 자료 유무

제8조(심사) 순교자기념사업부는 제6조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성을 준수하고 순교의 사실성에 비추어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1. 심사를 회기 중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차기 순교자기념사업부로 넘길 수 있다.
2. 최종 토론 후에는 순교자기념사업부 임원들의 비밀투표로 순직자 여부를 결정하고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단, 청원과 관련한 특수 관계가 있는 임원은 최종 토론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투표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3. 결정 사실을 총회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득함으로 순직자로 추서한다.

제9조 (순직자의 예우)

1. 총회 순직자 명단에 등재한다.
2. 총회장 명의로 순직자 증서를 수여한다.



3. 총회 홈페이지, 총회사(史)에 기록을 남긴다.

제10조 (부칙)

1.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사회통상례를 준용하되 총회 순교자기념사업부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순교자기념사업부 임원원회의 제안으로 임원 및 실행위원회에서 출석 3분의 2로 개정 한다.
3. 본 규정은 순교자기념사업부 임원 및 실행위원회에서 결의 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11조(규정양식) : 별지

2018년 9월